

(유권해석)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상하는것도 가능하다.

[국토부 2005.11.03 토지정책과-1043]

#### 질의요지

휴직 및 실직보상금은 휴직 또는 실직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

#### 회신내용

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직일수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,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휴업일수를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, 실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직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사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